

라. 포상금 지급기준 구체화 및 신고자 비밀보장(영 제63조 및 제64조)

- (1) 「식품위생법」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행위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, 신고자의 비밀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.
- (2) 위반 사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금액을 1천만원 이하부터 3만원 이하까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, 식품의약품안전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그 신분이 누설되지

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누설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.

- (3) 이와 같이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,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,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.

※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『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』 전부개정 공포

-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, 2009. 8. 12 -

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고,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수입업소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「식품위생법」(법률 제9432호, 2009. 2. 6. 공포, 8. 7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1676호, 2009. 8. 6. 공포, 8. 7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보고대상 이물의 기준과 보고 절차를 정하고 우수등급업소의 공표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,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규칙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을 전부개정 공포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등(규칙 제35조 및 별표 13)

가. 소비자 위생점검 절차 및 결과 표시

- (1) 식품제조·가공업자,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등이 소비자 등으로부터 위생관

리 상태의 점검을 받을 것을 신청하려면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신청서와 함께 제품명,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,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함.

- (2) 소비자 위생점검 결과 합격한 영업자는 그 사실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, 우수 등급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우수 등급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출입·검사·수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.

나. 식품 등의 이물 보고 기준 및 대상(규칙 제60조)

- (1) 식품등을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의 대상을 금속성 이물, 유리조각 등 식품등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물질, 기생충·동물의 사체 등으로 구체화함.

- (2)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 받은 영업자는 해당 식품, 이물의 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고, 이를 보고 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고받은 즉시 혹은 월별로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.

다. 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및 우수등급 업소 공표 등(규칙 제76조)

- (1)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실시하여 식품위생 수준 등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공급하는 영업소에 대하여 AAA등급, AA등급, A등급으로 등급을 구분하며, AAA등급을 우수등급으로 함.
- (2) 우수등급 영업소로 결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우수등급 영업소 결정서를 발급하고,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신문에 게재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.

※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